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
	배포일시	2019. 5. 9.(목) 총 5매(본문3, 참고2)	
담당 부서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	담당자	• 과장 김영욱, 사무관 최현희 • ☎ (044) 201-4655, 4651	
보 도 일 시	2019년 5월 10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10.(금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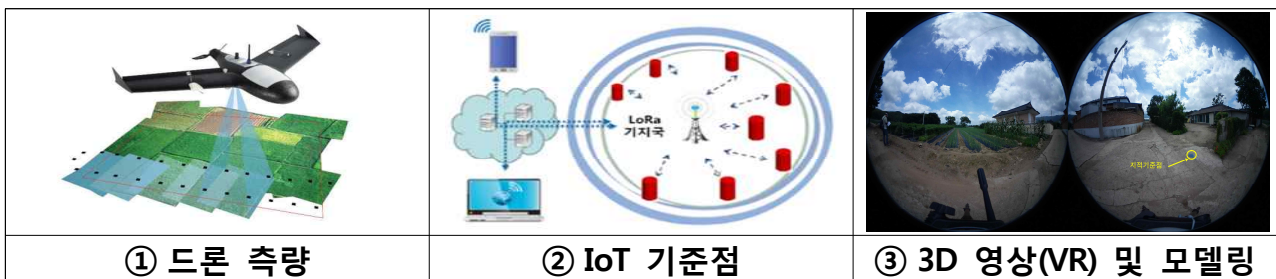
드론 띄우고 3D영상 보면서 내 땅 측량한다

10일 제4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출범...신기술 활용중점 추진과제 논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5.10일(금) 10시,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(위원장 국토부장관)를 개최했다.
 -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 중이며,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·의결하는 기구이다.
-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,
 - * 위원 구성(16명, 임기 2년) : 당연직(공무원) 4명, 민간위원 12명
 -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,
 -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①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, ②드론, 사물인터넷(IoT) 등 신기술 활용, ③책임 수행기관 지정, ④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.
-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작년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,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*를 정비했다.
 - *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(전국토의 14.8%에 해당)

- 이는 경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제약(ex. 건축 행위 제한 등)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.
- 한편, 현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(數値)화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.
 -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와 같은 공간정보산업과도 결합이 가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.
- 국토교통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“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,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출발점이 지적재조사 사업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, 사물인터넷(IoT), 3D 영상 등의 혁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 - 실제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, 사업기간 단축·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
< 지적재조사 측량에 신기술 활용 예시 >



-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약 30개 지구, 15천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.
 -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는 두 사업간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축되는 등의 경계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지적재조사기획단 최현희 사무관(☎ 044-201-465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개요

□ 100년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*를 바로잡고,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

*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집단적(10필지 이상)으로 불일치하는 토지

< 사업기간 및 사업대상 >

사업대상	사업기간	총사업비	근거법령
554만필지 (전국 3,743만필지의 14.8%)	'12~ '30 (19년간)	1조3천억원 ('12년 타당성재조사)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('11.9.16.제정)

2. 그간 투자실적

□ '12~'18년까지 929억원을 투입하여 49만 필지(총사업량 대비 8.8%)를 대상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 * '19년 예산 : 156억원

구 분	합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물량 (만필지)	49	1.8	10.3	2.8	7.3	8.5	9.3	9.0
예산 (억원)	929	34	215	80	150	150	150	150

3. 추진경과

- '50.12. 1. : 「지적법」 제정
- '11. 9. 16. :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('12.3.17., 시행)
- '12. 4. 25. : 지적재조사기획단 신설
- '12. 9. 20. : 지적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
 - 사업대상 : 554만필지, 총사업비 : 1.3조원, 사업기간 : '12. ~ '30.
- '13. 2. 27. : 제1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고시('12. ~ '30.)
- '16. 3. 25. :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고시('16. ~ '20.)

4. 사업내용

□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불부합하는 토지경계를 정비

< 사업 주요 사례 >



5. 사업절차

□ 국토부(기본계획 수립, 사업관리) → 시·군·구(실시계획 수립) → 시·도(사업지구 지정) → 시·군·구(경계확정, 조정금산정) 등 방식으로 수행

